의안번호	제 802 호			
의 결	2024년 월 일			
연월일	(제 회)			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조성태 의원 등 7인		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		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성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 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발 의 자: 조성태, 최정훈, 안지윤,
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
오영탁

1. 개정이유

○ 「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」 중 장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새마을운동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에 적정성을 기하고 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현 장학생 선발자격 중 새마을 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자녀를 새마을 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당해연도 한자녀로 개정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)
- O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공남금 전액의 120퍼센트에서 200만원 범 위로 변경함.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: 행정국 도민소통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기여한 자"를 "기여한 사람"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
 - 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
 - 3.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 난 사람
- 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"를 "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"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"를 "200만원 이내로 한다"로 하고, "범위 내에서"를 "범위에서"로 한다.

제12조 중 "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"를 "장학생 선정 후"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선발된 자가"를 "선발된 사람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혅

제5조(포상) 도지사는 새마을운동 제5조(포상) 도지사는 새마을운동 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 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 제7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 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 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 만, 유공자 장학생은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 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 녀
- 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 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 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 하는 자
- 3.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 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

개 정 아

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 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 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 녀
- 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 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 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 하는 사람
- 3.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 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 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
- 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

과 재능이 뛰어난 자

-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 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자녀 로 한정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 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 다.
-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 도지사(이하 "도지사 "라 한 다)와 협의하여 선정하고, 최종 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 다.
- 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 여야 한다.
 - 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 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 자의 자녀
 - 2. ~ 4. (생 략)
- 제11조(장학금액) 고등학교 장학 제11조(장학금액) 고등학교 장학 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

- 자녀로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 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-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 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 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녀는 제외한다.
- **제9조(선정)** ① 도 새마을 회장은 **제9조(선정)**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 도지사(이하 "도지사 "라 한 다)와 협의하여 선정하고, 최종 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 결과를 도지사에게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 다.
-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 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 여야 하다.
 - 1.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 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 자의 자녀
 - 2. ~ 4. (현행과 같음)
 - 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

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교 장 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 금은 시장·군수와 도 새마을 회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 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
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 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 략)

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교 장 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 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 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 금은 시장・군수와 도 새마을 회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 마을회장이 장학생 선정 후 50 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 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 제13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 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 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 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 -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새마을운동조직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해당년도 한자녀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하되, 예 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(제3장)

3. 관련조문

- 제7조(장학생 자격)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.
- 제11조(장학금액)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O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7조 및 제11조의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1,687,500천원

O 연 사업당 최대 337,500천원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337,500	337,500	337,500	337,500	337,500	1,687,500
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-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(도비 50%, 시군비50%)	337,500 (172명)	337,500 (172명)	337,500 (172명)	337,500 (172명)	337,500 (172명)	1,687,500 (860명)

□ 2024년도 장학금 집행현황

- 예산현액 : 337,500천원(도비 168,750/ 시군비 168,750)

- 선발인원 : 172명

- 집 행 액 : 269,148천원(도비 134,574/ 시군비 134,574)

- 집행잔액 : 68,352천원(도비 34,176/ 시군비 34,176)

□ 장학생 선발기준

- 1순위: 활동실적, 유공자 자녀, 성적우수자 (최초수혜자)

- 2순위: 기 수혜 지도자 자녀, 타장학금 중복 수급자 등

⇒ 1순위 대상자 우선선발 후, 잔여 예산 내 2순위 수혜자 선발